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on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Korea

Chang Seon Lim,¹ Gye Hwan Jin^{2,*}

¹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Radiology, Nambu University

Received: March 12, 2018. Revised: April 10, 2018. Accepted: April 30, 2018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to be reflected in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and the necessity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the results of perception surveys conducted on the subject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bout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the priority over "Somewhat satisfied" is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solo act (90.1%), and as for task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 are legalization of contrast media injection (85.8%), legalization of medical radiation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85.8%), legaliz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ethics committee (80.9%), legalization of Compulsory subscription (71.6%), etc. In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for radiologists about the enact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the priority above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includes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100%), legalization of medical radiation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97.1%), and legaliz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ethics committee (95.1%), and as for the task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 are legalization of "contrast media injection" (95.1%), and the necessity of Radiolog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94.34), etc.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s considered a top priority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importanc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agenda. This can be used as a data to determine the logical basi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Keywords: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Perception Survey, Legalization

I. INTRODUCTION

현대 사회는 건강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아지면서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2] 라고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3] 또한 같은 법 제2조에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중략...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4]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에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제시하고 있는 기본 이념을 실현해야 하는 「의료법」은 주로 의사 중심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의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의사보호법이라고 평가

* Corresponding Author: Gye Hwan Jin

E-mail: ghjin@nambu.ac.kr

Tel: +82-62-970-0159

하는 사례도 있다.^[5]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의학은 다원화·세분화되면서 그 영역에 합당한 전문인의 양성과 전문성에 따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1]

「의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간호사조차도 1977년부터 「의료법」에 간호사에 관한 규정 내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한 이래, 2005년 4월 김선미의원이 「간호사법」으로, 2005년 8월 박찬숙의원이 「간호법」을 입안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관련 단체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세계 80여 개의 국가에서 「의료법」과 「간호사법」이 분리된 점, 환자의 안전한 간호, 지역차별 없는 간호서비스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6-8]

물리치료사의 경우 1987년 10월에 물리치료원의 개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1996년 4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 소원에 대하여 ‘기각’ 결정된 이후에도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면허, 자격요건 등이 국제적 수준에 미흡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통한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독립개업권, 단독법, 단독진료권을 주장하고 있다.^[9-13]

방사선사는 그 업무행위가 의료행위이므로^[1] 방사선사는 의료인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일본의 「診療放射線技師法」^[14] 등 외국과 같이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해 왔다.

2003년 1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보건복지위에 제출하였고 2007년 말 방사선사 권익 확립을 위한 전문방사선제도 법제화 및 방사선사 개별법 제정을 중장기발전으로 계획하였으나 구체화하지는 못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의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1,15] 그러나 방사선사 개별법을 위한 입법 자료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 개별법 제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 개별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한 방사선사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사선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방사선사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제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협회 의무가입의 법제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업무수행에 대한 의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결격사유 강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II. MATERIAL AND METHOD

건강권과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초기 설문문항을 개발하였고 관련분야 전문가 3명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사전조사 및 변별력 테스트 후 일반적 사항 6개 문항, 연구주제에 관련된 18개 문항을 설문문항으로 결정하였다.

2017년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한방사선

사협회 시·도회장, 전문학회장, 의료기관 방사선사에게 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조사’의 설문지 190부를 배포하여 그 가운데 179부를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통계처리에 유용한 141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응답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ponse Rates to Questionnaire Survey on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Radiological Technologists	
		N (%) / (M±SD)	
Gender	male	121 (85.8%)	
	female	20 (14.2%)	
Age	20's	33 (23.4%)	
	30's	46 (32.6%)	
	40's	41 (29.1%)	
	50's	21 (14.9%)	
	Average	38.30 ± 9.482	
	License Acquisition Year	1980's	16 (11.3%)
	1990's	36 (25.5%)	
	2000'	45 (31.9%)	
	2010's	44 (31.2%)	
	Average	2002.98 ± 9.773	
Degree	Associate	45 (31.9%)	
	Bachelor	57 (40.4%)	
	Master	28 (19.9%)	
	PhD	11 (7.8%)	
Work Organization	General Practitioner	83 (58.9%)	
	Semi Hospital	54 (38.3%)	
	General Hospital	1 (0.7%)	
	Health Center	1 (0.7%)	
Work Experience (months)	University	2 (1.4%)	
	Hospital(N=132)	163.10 ± 110.194	
	Etc (N= 8)	77.25 ± 96.571	
Provinces	Education(N=14)	81.93 ± 47.277	
	Seoul	49 (34.8%)	
	Gyeonggi-do	25 (17.7%)	
	Gangwon-do	8 (5.7%)	
	Jeolla-do	15 (10.6%)	
	Kyungsang-do	21 (14.9%)	
	Chungcheong-do	23 (16.3%)	

설문지 응답은 PASW Statistic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각각 다음의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집단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의 빈도 및 비율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85.8%가 남성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8.3세이었다. 응답자들의 면허취득 연도는 평균 2002년으로 면허를 취득한지 15년 정도가 되었다. 학위는 학사 이상이 68%이었다. 응답자들은 97%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평균 13년 정도의 의료기관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방사선사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34.8%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의 순서로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III. RESULTS

1. 방사선사법 제정의 필요성

방사선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2%가 매우 중요, 31.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90.1%가 Table 2와 같이 방사선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을 받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방사선사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인증평가기구’가 현재 없으며,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방사선 교육 평가인증기구’가 설립되어 있으나 활동이 미미하였다.^[6] 그럼에도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34.0%가 중요하다. 28.4%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모두 62.4%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모두 5.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대한방사선사협회가 2003년 전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해 10월 제1회 전문방사선사 자격인 증시험을 실시하였다.^[17] 그리하여 2017년까지는 모두 15회의 자격인증시험이 치러졌으며, 응시분야도 13개로 확대되었다.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26.2%가 매우 중요하다. 31.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57.4%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모두 16.3%이었다. 따라서 방사선사의 기본적 업무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able 2. The responses on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Unit	Very satisfied	Somewhat satisfied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Somewhat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Sum
RTs Solo Act Enacting	Frequency	82	45	14	0	0	141
	Rate	58.2%	31.9%	9.9%	0.0%	0.0%	100%
Need to Radiolog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Frequency	40	48	45	6	2	141
	Rate	28.4%	34.0%	31.9%	4.3%	1.4%	100%
Advanced Practice RTs	Frequency	37	44	37	14	9	141
	Rate	26.2%	31.2%	26.2%	9.9%	6.4%	100%
Team Medical System such as Angiography	Frequency	42	50	36	9	4	141
	Rate	29.8%	35.5%	25.5%	6.4%	2.8%	100%
Legalization of RTs Contrast Media Injection	Frequency	84	37	13	4	3	141
	Rate	59.6%	26.2%	9.2%	2.8%	2.1%	100%
Legalization of RTs Thermograph	Frequency	51	40	41	7	2	141
	Rate	36.2%	28.4%	29.1%	5.0%	1.4%	100%
Legalization of RTs Fundus examination	Frequency	55	38	36	5	7	141
	Rate	39.0%	27.0%	25.5%	3.5%	5.0%	100%
Legalization of RTs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Frequency	49	42	36	8	6	141
	Rate	34.8%	29.8%	25.5%	5.7%	4.3%	100%
Legalization of Medical Radiation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Frequency	70	51	16	2	2	141
	Rate	49.6%	36.2%	11.3%	1.4%	1.4%	100%
Legalization of RTs Compulsory subscription	Frequency	67	34	24	10	6	141
	Rate	47.5%	24.1%	17.0%	7.1%	4.3%	100%
Legalization of RTs ethics committee	Frequency	64	50	20	6	1	141
	Rate	45.4%	35.5%	14.2%	4.3%	0.7%	100%

Radiological Technologists =RTs

4. 방사선사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방사선사 업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18] 혈관조영검사실 등 의료종사자간의 ‘팀의료제도’, ‘조영제 주사’, ‘체열진단기 검사’, ‘안저촬영’, ‘진료의 보

조’ 등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응답하였다.

즉 혈관조영검사실 등 의료종사자간의 ‘팀의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조영제 주사’에 대해서는 4.9%, ‘체열진단기 검사’는 6.4%, ‘안저촬

영'은 8.5%, '진료의 보조'는 10%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5.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제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46.9%가 매우 중요하다.

36.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85.8%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모두 2.8%이었다. 따라서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Table 3. Method of Execution of Operations and Disqualific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Method of Execution of Operations	Supervision and Direction	Direction	As Usual	Medical Prescriptions and Test Request	Independent Work	Sum
	6	5	16	81	33	141
	4.3%	3.5%	11.3%	57.4%	23.4%	100%
Disqualification	No Need at All	As Usual	Add a Criminal Offense	Add a Misdemeanor	Ethical Code Violators	Sum
	2	60	35	3	41	141
	1.4%	42.6%	24.8%	2.1%	29.1%	100%

6. 협회 의무가입의 법제화

협회 의무가입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47.5%가 매우 중요하다. 24.1%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71.6%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두 11.4 %이었다. 따라서 협회 의무가입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7.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Table 2와 같이 45.4%가 매우 중요하다. 35.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80.9%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 응답은 모두 5.0%이었다. 따라서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8. 업무수행에 대한 의사와의 관계

현행 법령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방사선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 따라서 현행 「의료기사법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도"는 "처방" 또는 "의뢰"로 하거나 현재의

의료현실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여야 한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방사선사의 업무수행방법은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하여야 한다가 Table 3과 같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적으로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23.4%에 달했다. 그리고 현행대로는 11.3%를 나타내었다.

9. 결격사유의 강화

방사선사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 현행대로 하여야 한다가 Table 3과 같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윤리규정 위반자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2%, 형사 범죄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24.8%에 달했다. 그러나 경범죄 추가에 대해서는 2.1%를 나타내었다.

IV. DISCUSSION & CONCLUSION

방사선사 업무는 법령상 미비로 인하여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의료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행동이므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법률적 해석을 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의학기술은 날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의료의 영역은 점차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의료보협제도의 시행과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의 확대에 따라 의료 이용량의 양적인 팽창은 병원 조직체계에 있어 업무의 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의사 단독으로는 의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15,19,20]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방사선사법 제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방사선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90.1%가 방사선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62.4%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였다.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57.4%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모두 16.3%이었다.

방사선사 업무에 있어서도 혈관조영검사실 등 의료종사자간의 ‘팀의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조영제 주사’에 대해서는 4.9%, ‘체열진단기 검사’는 6.4%, ‘안저촬영’은 8.5%, ‘진료의 보조’는 10%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모두 2.8%이었다.

협회 의무가입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 응답은 모두 11.4%이었다.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 응답은 모두 5.0%이었다.

따라서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법제화’, ‘팀의료제도’, ‘조영제 주사’, ‘체열진단기 검사’, ‘안저촬영’, ‘진료의 보조’,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제화’, ‘협회 의무 가입’,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이들에 대한 법제화를 신중히 검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사의 업무수행방법은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하여야 한다가 57.4%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적으로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23.4%에 달했다.

방사선사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 현행대로 하여야 한다가 42.6%로 가장 높았으나, 윤리규정 위반자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2%로 나타나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윤리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여기에 형사 범죄자도 결격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8%에 달했다.

이상과 같이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른 직종과의 관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업무영역이거나 전문직으로서 방사선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계법규상에 나타난 방사선사의 지위와 임상에서의 실제의 역할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방사선의료서비스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사에 관한 별개의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이 분야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knowledge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and Nambu University, 2018, IRB (1041478-2017-HR-012)

Reference

- [1] C. S. Lim, "A Study on Enacting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for the Civil Right to Health in Korea",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30, No. 4, pp. 313-320, 2007.
- [2]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1&lang=E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3]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2227&lang=ENG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4]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0970&lang=ENG (Medical Service Act)
- [5]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07843>
- [6] J. H. Kim,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 Vol. 32, pp. 215-261, 2015.
- [7] H. J. Lee, H. S. Kang,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3, pp. 355-364, 2006.
- [8] M. W. Lee, "Discussing 'Nursing Law' in terms of health 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3 No. 3, pp. 113-120, 2005.
- [9] B. O. Goo, S. Y. Lee, K.H. Kim, J.C. Jung, "The Necessity of Independent Clinic Open by Physical Therapist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Vol. 5, No. 2, pp. 143-150, 2010.
- [10] J. C. Baek, S. H. Yang, "Problems of the Physical Therapy System of Korea and Their Solution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5, No. 5, pp. 138-146, 2011.
- [11] J. W. Lee, E. G. Park, "A Study on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Law Review, Vol. 38, pp. 393-412, 2010.
- [12] S. S. HAN, "Review on the Enhancement of Accessibility to Rehabilitation Therapy -Especially on the Solo Practice of the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Vol. 22, No.1, pp.19-27, 2015.
- [13] S. W. Park, Y. H. Baek, J. S. Seo, J. E. Lee, J. H. Lee, S. H. Im, C. H. Kim, "The Literatural Review of World Physical Therapy Environment - Focus on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 12, No. 1, pp. 56-71, 2015.
- [14]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6AC1000000226&openerCode=1
- [15] C. S. Lim,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ing Directions of the Rules related Radiologic Technologist in Medical Law",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17, No. 1, pp. 87-96, 1994.
- [16] G. H. Jin, C. S. Lim, "Restructuring Enrollment Quotas of College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ol. 10, No. 6, pp. 411-418, 2016.
- [17] J. H. Choi, C. K. Kim, W. C. Kim, S. C. Kim, "Study on Development in Professional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9, No. 3, pp. 197-210, 2006.
- [18] C. S. Lim, Y. S. Lee, Y. D. Lee, H. S. Kim, G. H. Jin, S. Y. Choi, Y. Hur, "The job competency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Korea based on specialists opinion and questionnaire survey,"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Vol. 14, pp. 9, 2017.
- [19] W. S. Jung,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Semiannual, Vol. 15, No. 2, pp. 399-434, 2014.
- [20] D. H. Kim, S. H. Chung,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1, pp. 504-516, 2018.

방사선사법의 제정을 위한 인식조사

임창선,¹ 진계환^{2,*}

¹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²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

요 약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85.8%),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85.8%),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80.9%), 협회 방사선사 의 무가입의 법제화(71.6%)이었다. “보통”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100%),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97.1%),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95.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95.1%),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94.34)이었다. 필요성과 중요도에서 방사선사법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개별 안전에 따라서 필요성과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방사선사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중심단어: 방사선사법, 인식조사, 법제화